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	--

제안연월일 : 2025. 12.

제 안 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경과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심사 경과
2204678	조지연의원	2024.10.14.	·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1.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5.11.18.) 상정 후 축조심사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5.11.21.)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 폐기)
2205078	이용우의원	2024.10.30.	
2207267	안호영의원	2025.01.06.	·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5.7.1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5.11.18.) 상정 후 축조심사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5.11.21.)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 폐기)

나.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회(2025.11.21.)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
4.)는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
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해당 사업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유해·
위험요인에 관한 위험성평가 등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하
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그 사업에 대하여 산재보험
료율을 인하하여 감면된 “산재예방요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
음. 그런데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예방활동
의 인정을 받은 경우로서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사업의 경우
에는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은 기간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
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사업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료 재산정 부과 대상에 해당
하지 않음.

이에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에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재해예방
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사업의 경우에도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하여 보다 충실한 재해예방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법률 제 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9항 중 “제8항제1호”를 “제8항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제8항제2호 및 제3호”를 “제8항제3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재예방요율 적용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① ~ ⑧ (생 략)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u>제8항제1호</u> 에 따라 재해예방 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사업의 경우에는 산재예방요율 적용을 취소하고, 산재예방요율을 적용 받은 기간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여야 한 다.	⑨ <u>제8항제1호 및 제2호</u> ----- ----- ----- ----- ----- ----- --.
⑩ <u>제8항제2호 및 제3호</u> 에 따라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보험연도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비율 에 따라 산재예방요율을 적용하 여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요 율을 산정한다.	⑩ <u>제8항제3호</u> ----- ----- ----- ----- ----- ----- -----.
⑪ · ⑫ (생 략)	⑪ · ⑫ (현행과 같음)